

[별첨1]

인쇄 연간단가 계약서

2017년도 인쇄물 제작비 산출기준을 위한 연간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서울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_____(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작·의뢰하는 인쇄물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제작비 산출기준에 의하여 거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내용)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한 원고의 사진식자 등 인쇄물 전반에 대한 제작 및 납품을 내용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제4조 (계약단가) 인쇄비의 단가기준은 2005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제5조 (별도 인쇄계약) 제4조에 의거하여 산출한 인쇄산출금액이 건당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인쇄 연간단가 계약’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 (용지대의 계상) 인쇄물 제작에 소요되는 용지대는 제작기간의 “종합물가정보” 등 물가 자료의 고시가격에 의하며, 인쇄용지 손지율에 대하여는 인쇄기준요금표를 적용한다.

제7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상) 읍셋 인쇄 시 일반관리비는 제작원가의 10% 이내, 이윤율은 용지대 및 외주 가공비를 제외한 제작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합계한 금액의 20% 이내로 각각 계산한다.

제8조 (지급액 할인율) 읍셋 및 경인쇄물의 공급가액은 읍셋은 25%를, 경인쇄물은 20%를 할인하여 지급한다.

제9조 (감액 및 환수 조치)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 후라도 인쇄비 산출이 적정액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초과금액을 반납한다.

제10조 (대금지급방법) 인쇄가 완료되어 “발주기관”의 검사가 끝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조건에 의거 정산지급한다.

제11조 (계약조건 확인)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쇄물품에 대하여 인쇄제조에 따른 인쇄 부수, 지질, 규격 등 제 조건을 “발주기관”에게 확인 받고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감독 및 지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작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기관”의 감독과 지시 등에 따라야 한다.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추진상황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인쇄 제작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인쇄·제작을 수행한다.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작업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정·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작업진행 상황 등에 보고 또는 설명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고, “발주기관”이 직원을 파견하여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업무소홀로 인하여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6.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4조 (계약변경 등) “발주기관”의 경영상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존속하기 어려울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 (납품방법 및 검사) “계약상대자”가 인쇄물을 납품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알리어 검사절차를 필한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시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안유지 등)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수행 중 지득한 비밀 및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판권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인쇄한 판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게재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손해배상책임 등)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수행 중 제12조 내지 제16조를 위반하거나, 기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9조 (계약내용 해석) 본 계약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계약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익년도 기준요금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행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을 확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발주기관” : 서울연구원 재무담당원 (인)

“계약상대자”: (인)